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56

발의연월일: 2022. 1. 18.

발 의 자:이장섭·강준현·강훈식

김영배 · 김주영 · 송갑석

신정훈 · 이학영 · 최혜영

홍성국 · 황운하 의원

(119]

제안이유

최근 대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1,700개, 2030년 기준 107,500개의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 고 있음.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안에 들어 있는 리튬이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급격히 반응해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하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필요함.

특히, 폐배터리의 성능이 70~80%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사용전지"를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 (배터리)로 사용되었던 이차전지 등을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로 정의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 나. "안전성검사"를 재사용전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
- 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재사용전지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를 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각각 신설).
- 라.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을 금지함(안 제38조의4 신설).
- 마.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7까지 각각 신설).
- 바. 사용후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8 조의8 및 제38조의9 각각 신설).

사. 그 밖에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등에 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49조 및 제51조 등).

법률 제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재사용전지"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된 이차전지(이하 "사용후전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를 말한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또는 설비
- 19. "안전성검사"란 재사용전지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38조의5제 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 상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 품 및 재사용전지"로 한다.

제7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

- 제38조의2(재사용전지 제조업자의 안전성검사의무 등) ① 재사용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하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라 한다)는 재사용전지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전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할수 있다.
 - ②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38조의3(재사용전지의 안전성검사표시등) 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은 재사용전지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제38조의2제1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재사용전지에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재사용전지 제조업자·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및 대여업자
- 2. 재사용전지를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3. 재사용전지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4. 재사용전지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사용전지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물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8조의4(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사용전지의 판매중개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38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5(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재사용전지 제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 중에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기준 중 검사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성검사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재사용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 다.
- ⑥ 그 밖에 지정 및 변경지정의 방법·절차와 안전성검사에 관한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 4.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기준의 중 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6.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보관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지 정할 수 없다.
- ③ 그 밖에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에 필요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제38조의6제 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38조의8(사용후전지 정보의 공유·활용) 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및 안전성검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안전 성검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후전지의 충

전·방전 횟수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2조제18호 각 목의 제작자 및 판매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안전성검사기관 및 재사용전지 연구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후전지에 관한 정보 활용을 위한 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의9(손해배상책임) 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재사용전지의 구매자,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시·도지사는 재사용전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사용전지 제조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전지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 하고 재사용전지로 판매하거나 대여한 경우
- 2.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 한 경우
- 4.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판매·대여한 재사용전지의 안전성검 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5. 제2조제18호 각 목의 이차전지가 제조상 결함 등의 이유로 개선·파기·수거·판매중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전지로 판매·대여된 경우

제42조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 1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4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49조제1항제34호를 제4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4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35.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재사용전지로 판매한 자
 - 3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자
 - 37.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 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38. 제3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재사용전 지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 39.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 지의 판매를 중개한 자
 - 40.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 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성검사를 한 자
 - 4.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10.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

지를 사용한 자

- 11.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2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3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자본재공제조합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 23.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24. 제3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25.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 26. 제3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보관한 안전성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8. "재사용전지"란 다음 각 목		
	의 용도로 사용된 이차전지		
	(이하 "사용후전지"라 한다)		
	를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		
	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		
	2호의6나목에 따른 전기저		
	<u> 장장치</u>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제품 또는		
	<u>설비</u>		
<u><신 설></u>	19. "안전성검사"란 재사용전지		
	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38		
	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전 제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 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u>안전기준준수대상</u> 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 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 7. (생 략) ② ~ ⑤ (생 략) <<u>신 설></u> <신 설>

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①
1
ᄾᆝᅱᅱᆽᅩᄼᆌᆡᅦ
안전기준준수대상생
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
<u>활용품 및 재사용전지</u>
2. ~ 7.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제7장의2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
제38조의2(재사용전지 제조업자
의 안전성검사의무 등) ① 재
사용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이하"재사용저지 제주업자"라

한다)는 재사용전지를 판매하

거나 대여하려면 미리 산업통

<u><신</u> 설>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전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서류를 보관하여야한다.

제38조의3(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표시등) ① 제38조의5제1 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은 재사용전지에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성검사의 표시 및 제38조의2제 1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 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하 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

한 자는 재사용전지에 안전성 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사용전지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재사용전지 제조업자·판매업 자·판매중개업자 및 대여업자
- 2. 재사용전지를 부분품이나 부 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 조하는 자
- 3. 재사용전지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4. 재사용전지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 여 재사용전지를 판매·대여·판 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 용전지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 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 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 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야 한다.

제38조의4(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재사용전지 제 조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

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사용전지의 판매중개업자 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를 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 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 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 전지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 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 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38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를 사용하여서

제38조의5(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아니 된다.

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재사용전지 제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 중에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기준 중 검사설비 등 산업통상자원 부렁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 성·보관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 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재사용전 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 역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을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지정 및 변경지정의 방법·절차와 안전성검사에 관한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 4.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기 준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6.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기록을 작성·보관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 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 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③ 그 밖에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에 필요한 내용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 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제38조의6제1항 각 호에따른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u><신 설></u>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 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 징수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조의8(사용후전지 정보의 공유·활용) 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및 안전성검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도불구하고 안전성검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후전지의 충전·방전횟수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전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8호 각 목의 제작자 및 판매자는 재사용전지 제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 등) ① ~ ⑤ (생 략)

조업자, 안전성검사기관 및 재 사용전지 연구기관 등이 제1항 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 후전지의 재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후전지에 관한 정보 활용을 위한 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9(손해배상책임) ① 재사 용전지 제조업자는 재사용전지 의 구매자, 사용자 또는 제3자 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1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 하거나 「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 조합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시·도지사는 재사용전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재사용전지 제조 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전지의 판매중지등을 명 할 수 있다.
- 1.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 하고 재사 용전지로 판매하거나 대여한 경우
- 2.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 한 경우
- 4.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판매·대여한 재사용전지의 안 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5. 제2조제18호 각 목의 이차전 지가 제조상 결함 등의 이유 로 개선·파기·수거·판매증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전

- ⑥ 시·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 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 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 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 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 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 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 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 대행업자가 부담한다.
- ①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 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⑧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u>제6</u> <u>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 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 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

지로 판매·대여된 경우
<u>⑦</u>
제6항
,
⑧ 제7항
<u>.</u>
<u>⑨</u>
<u>항</u>

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 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 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 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 지 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0조제1항부터 <u>제6항</u>까지
 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 2. 3. (생략)
- 제4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 14. (생 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1. 3. (235) 在日/
세42조(자료제출 요구)
1 <u>체7항</u>
2.・3. (현행과 같음)
세43조(수수료) ①
· 1. ~ 14. (현행과 같음)
<u>15.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u>

② (생략)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u><신 설></u>

<u>4.</u> (생 략)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안
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
 려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청문)
1.•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
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
<u>무정지</u>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49조(벌칙) ①
•

1. ~ 33.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33. (현행과 같음)

3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안전성검사기관으로지정을받은 자

35.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재사용전지를 판매한 자 3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 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 사를 한 자

37.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8. 제3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재 사용전지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39.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를 중개한 자40.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성검사를 한 자

3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41.</u> (현행 제34호와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③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
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를 사용한 자
11.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제51조(과태료) ①
<u>.</u>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8조의9제2항을 위반하

5. ~ 8.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1. (생략)

<신 설>

<u><신</u>설>

<신 설>

<신 설>

<신 설>

22. (생략)

③ (생 략)

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ス	.}-	

- 5. ~ 8. (현행과 같음)
- (2) -----

-----.

- 1. ~ 21. (현행과 같음)
- 2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서류를 갖추어 두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 어 둔 자
- 23.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 니한 자
- 24. 제3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 하지 아니한 자
- 25.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자료를 보관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 추어 둔 자
- 26. 제3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보관한 안전성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7. (현행 제22호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